

의안번호	2205732
의 퇴 인	권영진의원
회 답 일	2024.11.29
추 계 번호	24B5264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 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 ¹⁾ 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29조 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어, 이러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대해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사례는 없음
 - 그런데 현시점에 시·도지사에게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대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시·도별 특화단지 지정 수요 및 재정지원 방법과 내용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

1) 안 제29조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)

① 국토교통부장관 시·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, 관리·운영,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

시계획, 민간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산될 것이나 이러한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다만,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현황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현황

자료: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□ 사업 개요

-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시민·기업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제안하면, 경쟁을 거쳐 실증·확산 지원

【스마트시티 솔루션 주요 사례】

수요응답형 버스	신재생에너지	스마트횡단보도
		

□ 그간 경과

- '19~'21년 동안 공모사업 형태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의 성과 도출

- ◀(인천) 대중교통 사각지대 ⇨ 수요응답버스를 도입하여 이동·대기시간 70분 이상 절감
- ◀(부천) 주차장 부족 ⇨ 공유주차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차 48%↓, 주차장 수급 72%↑
- ◀(대전) 구도심 전통시장 노후화 ⇨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화재사고 5건 예방

- '21년까지 57개 도시(중복제외 시 53개)를 사업대상으로 선정·추진, '22년 마지막 시티챌린지 선정 4개소는 '23년까지 완료 계획

구 분	목 적	대 상	기간/사업비	사업추진 지자체
시티챌린지	도시문제 해결	모든 시·군	3년/215억원	'21년까지 6개 + '22년 4개
타운챌린지	중소도시 특화 조성	50만 이하 시군구	1년/30억원	'21년까지 15개
캠퍼스챌린지	대학연구와 연계	대학+기업+지자체	1년/11~15억원	'21년 8개(대학기준)
솔루션 확산	우수솔루션 보급	모든 시·군·구	1년/20~40억원	'21년 32개

- '22년부터는 지역사업을 사업구성에 따라 ①지역거점 조성(종합적 스마트 시티), ②중소도시 조성사업(솔루션 중심)으로 개편하여 추진

구 분	목 적	대 상	기간/사업비	사업추진 지자체
지역거점	종합 스마트시티 조성*	모든 시·군	3년 / 240억원	'22년 4개
중소도시	특화 솔루션 보급	100만 이하 시군구	1년 / 40억원	'22년 16개

□ 추진 현황

- (지역거점) 지역과 기업, 주민 주도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, 그 성과를 주변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*
 - * 솔루션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계획, 스마트 인프라 구축, 도시운영플랫폼 등 스마트시티 구성 요소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스마트화 추진
 - 광주광역시, 경남창원, 전남해남, 강원횡성 등 4개 지자체를 선정('21.12)하고, 전문가 컨설팅, 사업협약(국토부-지역)을 거쳐 사업 추진
- (중소도시) 인구규모가 작은 중소도시까지 빠짐없이 스마트 솔루션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역 공모사업 실시('22.1, 16개소)
 - 정부 주도의 메뉴판식 솔루션 구축사업이 아닌, 지역주도 아래 도시상황을 진단하고,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- * 계획수립부터 솔루션 구축·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솔루션 모델로 정부차원의 핵심기술 컨설팅 지원('22.2~4)

□ 향후계획

- '23년부터는 국정과제* 방향에 맞춰 ①거점형 스마트시티, ②도시아젠다 대응형 강소형 스마트시티, ③스마트솔루션 확산 등으로 유형 개편
 - * ①국가시범도시 조성, ②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, ③스마트솔루션 전국확산 등
- (거점형) 지역과 기업,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발굴·해결하고,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조성
- (강소형) 인구구조 변화, 기후위기 등 미래 도시 아젠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강소도시로 육성

- (기후위기 대응형) 탄소저감, 제로에너지 등 / (인구변화 대응형) 고령화저출산 등
- (솔루션 패키지) 농산어촌·소도시를 대상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교통안전복지 등의 필수 솔루션을 보급하여 서비스 격차 해소